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61
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15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8월 12일 김경영 의원의 11명
2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9월 2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경영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‘점자·음성변환용코드’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‘인쇄물 접근성 바코드’란 용어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점자·음성변환용코드’를 ‘인쇄물 접근성바코드’로 변경함. (안 제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동 조례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‘점자·음성변환용코드’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‘인쇄물 접근성바코드’란 용어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세부 조례내용 검토 : 인쇄물 접근성바코드

- 중증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하고 있고, 점자·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음성변환용 출력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자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.
- 현 조례의 ‘점자·음성변환용 코드’ 용어는 점자와 음성변환용 코드를 각각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음.
-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텍스트 정보의 음성변환 뿐만 아니라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확대문자 등 다양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자·음성변환용코드로 수단을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‘인쇄물 접근성바코드’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: 원안동의

-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용어 변경으로 쟁점사항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3

종합의견

- 점자 또는 점자·음성변환용 코드 중 어느 하나만 제공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, 점자·음성변환용 코드 외에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전자적 표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본 개정 조례안의 상위법(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)에서도 음성변환용 코드뿐만 아니라 청각,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를 포괄할 수 있는 ‘인쇄물 접근성바코드’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될 여지는 없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6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김경영·서윤기·이영실·

김생환·송재혁·박기재·

봉양순·김기덕·이현찬·

우형찬·최 선·김춘례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‘점자·음성변환용코드’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‘인쇄물 접근성바코드’란 용어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점자·음성변환용코드’를 ‘인쇄물 접근성바코드’로 변경함. (안 제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점자자료, 점자·음성변환용코드”를 “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2항에서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개정하여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